



구례군 임신·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5. 11. 11.] [조례 제2689호, 2025. 11. 11., 일부개정]

전라남도 구례군(인구청년실), 0617802961

제18조(난임부부 지원사업) ① 군수는 법에서 정하는 “난임” 부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<개정 2025. 11. 11.>

1. 의학적·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<신설 2025. 11. 11.>
 2. 난임 관련 상담, 교육 및 홍보<신설 2025. 11. 11.>
 3.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<신설 2025. 11. 11.>
 4.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신설 2025. 11. 11.>
-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기준 및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<신설 2025. 11. 11.>

부칙 <조례 제2605호, 2024. 6. 28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산후관리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) 이 조례에 따른 산후관리비 지원은 출산일이 2024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양육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양육비 지원 신청에 대해서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양육비 지원을 받거나 받을 사람은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육비 지원을 받거나 받을 사람으로 본다.

제4조(임신지원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임신지원금 지급 신청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신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사람은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신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사람으로 본다.

제5조(다른 조례의 개정) 구례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호 중 “「구례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 조례」 제3조”를 “「구례군 임신·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부칙 <조례 제2689호, 2025. 11. 11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